

대구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10526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9. 23.

판결 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4. 11. 9.까지는 연 6%의, 2014. 11. 1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9%의, 2015. 1. 9.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5%의,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체결한 매매계약을 45,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피고 A은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11. 9. 1.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8. 13.까지로 하여 위 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엘지유플러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A, B는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밖에 원고가 지급보험금 등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현재 원고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에는 연 15%이다.

3)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2. 3. 22.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 2012. 12. 27. 보험가입금액을 1억 1,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위 각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엘지유플러스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엘지유플러스에 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의 부동산 매매

피고 B는 2013. 4. 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3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피고 B는 2013. 4.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9.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서울은행(현재 상호 : KEB 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을 1,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10.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12. 말소되었는데 위 해지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7,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2014.11. 9.까지는 연 6%의, 2014. 11. 1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9%의, 2015. 1.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5. 8.까지는 연 15%의,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3. 1.경부터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 2)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가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또한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

-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것이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2)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부동산업 등을 하던 사람인 사실, 피고C가 2013. 4. 9. 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3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2013. 4. 9. E에게 300만 원을 보관시키고 같은 달 10. 계약금 및 중도금 4,300만 원 중 35,488,965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고 7,510,035원을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피고 C가 그 후 2013. 5. 23. 피고 B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중 다른 호수에 관하여 2012. 11.경 5,500만 원 내지 6,650만 원, 2012. 12.경 6,400만 원, 2013. 2. 5., 55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사실, 피고 C와 피고 B가 친인척 관계 등에 있지 아니하고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혁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동구 F, G, H, I, J에 있는 K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1397.39㎡

2, 3층 각 1413.82㎡

4층 838.78㎡

지하 1494.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동구 F 대 449.3㎡

대구 동구 G 대 1099.8㎡

대구 동구 H 대 196㎡

대구 동구 I 대 461.2㎡

대구 동구 J 대 67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19호 철근콘크리트조 15.4평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49.3분의 28. 끝.

